

이민자의 권리: 주택 관련 나의 권리 알기

뉴욕시에서는 실제든 단순히 인정받은 것이든 귀하의 이민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국적을 이유로 주택에 관한 차별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민 상태 또는 시민권 상태와 관계없이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 임대인이 누군가의 이민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국적을 이유로 주택을 매매, 렌트 또는 리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조건 또는 권리를 제시하는 행위.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국적을 이유로 주택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열악한 주택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국적을 이유로 ICE에 전화하겠다고 겁박하거나 “불법 이민자” 같은 용어를 쓰는 등 세입자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위.



... 임차인이 차별적 관행에 대항하여 NYC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나 다른 관계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행위.

귀하의 이민 상태나 시민권 상태 또는 국적이거나 기타 보호 계층 자격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즉시 **(212) 416-0127**로 인권위원회에 연락해 신고하십시오.



on.nyc.gov/
reportdiscrimination